

선 람	기관장

시 G 보

제19호 2023. 5. 10.(수)

고 시

광양시 고시 제2023-160호 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 1

공 고

광양시 공고 제2023-1057호 공사출발공고 3

광양시 공고 제2023-1061호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

광양시 공고 제2023-1062호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▶ 발행 : 광양시 ▶ 편집 : 홍보소통실 (☎ 797-2323, 행정2713)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개별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5. 10.

광 양 시 장

○ 도로명주소

구 분	고 시 대 상	고시조서	비 고
도로명주소 (건물번호) 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삼정길 112 외 1건	별지참조	
	아 래 빈 칸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(☎797-3388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3. 5. 10.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도로명주소(건물번호) 고시 대상

연번	업무구분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 사유
계	건 물 번 호 부 여 2 건					
1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1262, 1261-1	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삼정길 112	20230510	20081001	마을지명에서 인용
2	건물번호부여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501-1	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치로 209	20230510	20220112	대치재의 지형지물에서 인용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4항 규정에 의거, 임대사업자에게 「공공건설임대주택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매각에 따른 시정 조치 요청」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5월 10일

광 양 시



1. 공고내용 : 공공건설임대주택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매각에 따른 시정 조치 요청
2. 법적근거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제4항 위반
3. 공고기간 : 2023. 5. 10. ~ 2023. 5. 30.(20일간)
4. 공고장소 : 광양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관
5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공공건설임대주택 소재지	임대사업자	송달내용	반송주소	반송사유
광양시 광양읍 서평1길 9, 덕진광양의봄아파트	주식회사***현	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공건설임대주택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매각에 따른 시정 조치 요청	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02, 102동 2008호 (이촌동, 대림아파트)	수취인 불명

6. 유의사항

- 위 내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공공건설임대주택 덕진광양의봄아파트 매각에 따른 시정 조치 요청합니다.
-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광양시 건축과(☎061-797-28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광양시 공고 제2023-1061호

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9일

광 양 시 장

1. 조례명: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차피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 법령인 『지진·화산대책법』과 『실내 공기질 관리법』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 조항 반영

3. 주요 내용

-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 법률 변경

- 지진재해 대책법 → 지진·화산재해대책법
-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→ 실내공기질 관리법

4. 입법예고

- 예고기간: 2023. 5. 9. ~ 5. 30.(22일간)
- 예고방법: 시보, 홈페이지 게재

5. 일부개정조례안: 별첨

6. 의견 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: 안전총괄과장, 전화: 061-797-3266, FAX: 061-797-2593, E-mail: mingil303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2.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붙임 1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 례 명: 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소:

○ 연락처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붙임 2

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「지진재해대책법」”을 “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제5항제1호 중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”을 “「건설기술진흥법」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”을 “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,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지진재해대책법」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 1 조 (목 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 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----- -----
제5조(위험도 평가단 구성·운영 등) ① ~ ④ (생략) ⑤ (생략) 1.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따른 건축, 토목, 안전관리(건설안전)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2. ~ 3. (생략) ⑥ ~ ⑦ (생략)	제5조(위험도 평가단 구성·운영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 1. 「건설기술진흥법」----- -----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 ⑥ ~ ⑦ (현행과 같음)
제7조(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) ① (생략)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 및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③ ~ ④ (생략)	제7조(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「실내공기질 관리법」 ----- ----- ③ ~ ④ (생략)

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 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5월 9일

광 양 시 장

1. 조례명: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한 상위 법령인 『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』과 『지방재정법』의 일부개정에 따라 법 조항 반영

3. 주요 내용

- 기금의 장기에치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 법률 변경
 - 지방재정법 제 77조 → 지방회계법 제38조
- 기금의 용도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용 법조항 반영
 - 법 제3조제1호다목 → 나목(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)

-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에 대한 규정 변경
 - 영제74조제1호마목 → 제6조제1호마목

4. 입법예고

- 예고기간: 2023. 5. 9. ~ 5. 30.(22일간)
- 예고방법: 시보, 홈페이지 게재

5. 일부개정조례안: 별첨

6. 의견 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(참조: 안전총괄과장, 전화: 061-797-3266, FAX: 061-797-2593, E-mail: mingil303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

- 붙임 1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2.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 례 명: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소:

○ 연락처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붙임 2

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광양시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”를 “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”로 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법 제3조제1호다목”을 “법 제3조제1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영 제74조제1항마목”을 “제6조제1호마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·관리) 장기예치기금액은 「지방재정법」 제77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 융기관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	제4조(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·관리) ----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----- -----
제6조(기금의 용도) (생략) 1. (생략) 가. ~ 사. (생략) 2.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 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3. (생략) 가. ~ 다. (생략)	제6조(기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3조제1호나목----- ----- 3. (현행과 같음)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제7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) ①시장은 영제 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 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. ② ~ ⑤ (생략)	제7조(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용자 등) ①-----제6조 제1호마목----- ----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